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불공정한 거래조건 금지 및 표준협정서 신고 의무 부과 등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89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전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불공정한 거래조건 금지 및 표준협정서 신고 의무 부과 등	3
2.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의 산정 순위 표시행위 금지	11
※ 참고.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	1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4.

다. 회부연월일 : 2024. 7.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관련 생태계를 관장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부상하였음.

이에 따라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가 모바일 앱 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로 대두하였음.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결제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유럽연합의 EU 집행위원회도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 Act)에 합의하는 등 모바일 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법제도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다시 앱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앱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시장경쟁 제한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마켓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11, 제27조제1항제3호의6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불공정한 거래조건 금지 및 표준협정서 신고 의무 부과 등

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한 거래조건 금지와 표준협정서 신고 의무 부과 및 시정명령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22조의11 신설). 또한 이러한 의무 신설에 맞추어 사업의 폐업 명령,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의 제재 규정을 둠(안 제27조제1항제3호의6 신설, 안 제92조제1항제1호, 안 제104조제3항제1호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11(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앱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앱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앱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체결하는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1. ~ 3의5. (생략)

<신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앱마켓 사업자의 협정서의 표준양식이 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명령 등) ① -----

-----.

1. ~ 3의5. (현행과 같음)

3의6. 제22조의11제2항에 따라 신고한 협정서의 표준양식과 다른 조건으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

② (생략)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② (현행과 같음)

1. -----

---- 제22조의9까지, 제22조
의11-----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u>1의4. 제2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사항

-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체결하는 협정서의 표준 양식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앱 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 앱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일반적으로 앱 개발자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로는 소비자에게 접근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
- 그런데 최근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타 앱 마켓(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¹⁾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앱 마켓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용의견과 함께 중복규제 가능성 및 체계 적합성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함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반경쟁 행위 제재”, 2023.4.11.

○ 개정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안 제22조의10제1항의 불공정 거래조건 금지 내용의 경우 앱마켓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 부과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한편, 안 제22조제10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표준협정서 신고 의무 부과 및 그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등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사업자 간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게 하기보다 정보통신융합법 제22조제3항²⁾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문체부, 공정위, 방통위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중개) 표준계약서”를 제정 공고('22.3.)하고 그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업계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규제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앱마켓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 부과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과 법 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제22조의11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금지행위 조항(제50조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하여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

2)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확립)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업자에 대하여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세부 유형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안 제22조의11제1항은 공정거래법 제5조³⁾ 및 제45조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일한 규율내용에 대해 중복규제가 도입될 경우 법집행의 일관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안 제22조의11제2항·제3항과 안 제92조제1항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의 협정서의 표준양식이 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모바일콘텐츠 등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사업자가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소지가

3)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안 제22조의11제1항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적절한 사항이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은 앱 마켓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사적 계약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규제뿐만 아니라 사후규제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안 제22조의11제1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중복 규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 애플은 안 제22조의11제1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중복 규제에 해당되며, 동조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사업자에 비해 덜 엄격하게 규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앱 마켓사업자)에게 앱 개발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동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통하여 규제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의견임.

2.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의 산정 순위 표시행위 금지

앱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 -----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 ----- ----- ----- ----- ----- ----- ----- -----.
1. ~ 11. (생략) <u><신설></u>	1. ~ 11. (현행과 같음) 12. <u>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u> <u>중개하는 사업의 규모 및 시</u> <u>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앱 마</u> <u>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u> <u>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u>

②・③ (생략)	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 ②・③ (현행과 같음)
----------	--

□ 검토사항

-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순위로 인해 일부 앱 개발사가 해당 지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등 앱 마켓 시장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른 금지행위 유형에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의 산정 순위 표시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2014년 80-85% 수준에서 2019년 85-9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⁴⁾ 매출액과 다운로드 기준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공고히 하거나 혹은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반경쟁 행위 제재”, 2023.4.11.

고려하여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앱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며 소비자의 효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정 앱의 매출액 및 다운로드 수는 해당 앱을 이용한 타 소비자들의 평가와 관련된 정보로서, 소비자들이 앱 구매를 선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둘째, 순위 표시가 금지될 경우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앱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들에게 추가적인 광고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앱 개발자들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자신의 앱이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하도록 노력할 유인이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개발 유인을 저해하는 동시에 개발자들에게 자신의 앱을 알리기 위한 별도의 홍보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별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앱 마켓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플랫폼 사업자의 순위 표시를 통한 정보 제공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순기능도 존재하므로 이용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⁵⁾

5) 앱 마켓을 포함한 중개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판매량(거래량), 가격, 리뷰 점수 등을 기준으로

- 또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여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별도 광고비 지출 등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관련하여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등 주요 콘텐츠사업자 의견에 따르면 앱 마켓의 순위 표시가 금지되면 다른 홍보·광고 수단 도입 또는 앱 마켓 사업자 자체 기준에 따른 콘텐츠 추천 등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추가 광고비 부담이 초래되거나 오히려 앱 마켓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⁶⁾가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검토·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매출액·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나, 앱 순위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점, 해당 앱마켓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출액·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가 많은 앱마켓에만

순위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탐색비용 절감 및 편의를 지원한다는 입장임.

6) 앱 마켓을 포함한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은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용자에게 탐색비용 절감, 이용자 경험(UX) 향상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해당 플랫폼의 품질과 직결된다는 입장임.

앱을 출시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특정 앱마켓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른 중개형 플랫폼⁷⁾과 같이 다양한 기준으로 앱 순위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개 정 안	방통위 수정의견
제50조(금지 행위) ①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금지 행위) ① (생 략) 1. ~ 11. (개정안과 같음) 12. -----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u> ②·③ (개정안과 같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순위 표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해 사업자의 경영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매출액·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

7) 쿠팡(인기순,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판매량 순, 리뷰 순 등), 배달의 민족(배달 빠른 순, 주문 많은 순, 별점 높은 순, 가까운 순 등) - 신규상품 및 서비스도 우선순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 마련

한 순위 표시가 소비자 이용 편의 및 정보제공 측면에 미치는
순기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고 국내 앱마켓 시장의 유효한 경쟁환경 조성 등에 대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임. 순위 표시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순위를 산정하는 방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4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원스토어는 앱마켓 사업자가 중개하는 앱에 대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기하는 것을 멈추면 국내 콘텐츠 기업들도 수수료가 낮은 국내 앱마켓 입점을 고려할 수 있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지기에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모바일콘텐츠의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콘텐츠 제공자에게 추가적인 광고비 지출을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개정안에 대해 이용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콘텐츠 제공자에게 추가적인 광고비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판매순위 표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입점 업체간 효율적 경쟁유도 등의 목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플랫폼에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수단으로,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할 경우 정당성이 결여된 과잉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 애플은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의 표시를 금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효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EU의 Digital Markets Act도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임. 또한, 앱 개발사들이 매출액 및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기로 결정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앱순위 표시 금지가 개정안의 입법목적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5

※참고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⁸⁾

□ 개 요

- 디지털콘텐츠의 계약 유형별로 낮은 단가 요구, 대금 미지급, 대금깎기, 과도한 정보요구 등 불공정 관행을 사전 예방하고자,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사항 중 공통 적용 가능한 규정, 거래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정형화된 표준 문서

※ (법적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주요내용

구분	계약 당사자	주요 내용
제작	콘텐츠제작의뢰자 ↔ 콘텐츠제작자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사업자가 제작사업자에게 콘텐츠제작을 의뢰하는 계약)	제작협의 및 지시, 시용상품의 제작, 납품, 기술자료 제공강요금지, 검수, 지식재산권의 양도, 대금 조정, 감액금지, 대금지급, 이행보증금, 하자담보책임,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사항 반영
	콘텐츠제작의뢰자 ↔ 콘텐츠제작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 ↔ 하수급사업자] (콘텐츠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제작을 제작사업자에게 다시 의뢰하는 계약)	제작협의 및 지시, 시용상품의 제작, 납품, 기술자료 제공강요금지, 검수, 지식재산권의 양도, 대금 조정, 감액금지, 발주자의 대금직접지급, 대금지급, 이행보증금, 하자담보책임,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사항 반영
유통	콘텐츠공급자 ↔ 통신판매중개자(앱 마켓 등) [중개의뢰인 - 중개인]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에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가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거래계정의 제공, 거래정보의 등록, 신원정보의 확인 및 정정, 콘텐츠의 검사, 정보의 무단변경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이용자에 대한 책임, 부당한 심사지연 금지, 검색·배열순서 결정 기본원칙 공개, 결제방식 강요 금지, 정산금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계약 해지 등을 규정 * 「상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사항 반영
	콘텐츠공급자 ↔ 위탁매매인 [위탁인 - 위탁매매인] (콘텐츠 제작자 등을 대신하여 위탁매매인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콘텐츠의 판매가격, 콘텐츠 공급, 위탁매매를 위한 정보제공, 판매서비스의 제공, 광고, 판촉, 지식재산권의 보호, 판매수수료 산정기준, 정산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규정 *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규정사항 반영.
	콘텐츠공급자 ↔ 퍼블리셔 [위임인 - 퍼블리셔] (콘텐츠 제작자 등을 대신하여 퍼블리셔가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작협의, 콘텐츠의 공급, 퍼블리싱을 위한 정보제공, 기술자료제공강요금지, 콘텐츠의 판매가격, 판매개시 및 판매서비스의 제공, 광고, 판촉, 무단변경금지, 저작권의 보호, 선지급금, 판권료, 정산금의 지급,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규정 *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규정사항 반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7.